

---

일본 소비자청 공청회 개최에 따른

## 일본의 식품표시제도 변경에 대한 종합분석

- 식품표시기준 통합운영 및 신기능성 표시제도 등 -

---

1. 식품 표시기준의 통합 운영 및 영양성분 표시 의무화
2. 기능성식품 표시제도의 신규도입
3. 일본 식품표시기준제도 변경에 따른 동향 분석

<참고> 일본 식품표시제도의 세부 변경내용

2015. 3. 17.

**aT**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도 교 지 사

## □ 식품표시 기준의 통합 운영

- 현재 58개의 기준으로 운용되어 오던 식품에 대한 표시기준이 소비자청에서 1개의 일괄 기준으로 통합 운영('15.4.1부터)
- 현재 표시의무화 되어있는 표시범위(식품, 사업자등)에 대해서는 현재와 동일
  - 예외사항으로는 식품위생법과 JAS법 기준의 통합에 있어서 가공식품과 신선식품에 대한 구분등을 변경
  - 식품위생법, 건강증진법(후생노동성 소관), JAS법(농림수산성 소관)

## □ 영양성분 표시 의무화

- 식품관련사업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소비자용 가공식품 및 첨가물에 대해서 영양성분을 반드시 표기토록 의무화 조치
  - 의무표기 : 에너지, 단백질, 지질, 탄수화물, 나트륨(식염상당량)
  - 임의(권장) : 포화지방산, 식물섬이
  - 임의(기타) : 당류, 당질, 콜레스테롤, 비타민·미네랄류
- 안전성에 관한 규정을 보다 알기 쉽게 개정
  - 예를 들어 알레르기 표시관련 특정가공식품 원재료에 마요네즈로 표시한 경우에 계란을 포함하였다는 표시를 생략 가능하였으나 향후 반드시 표기토록 개정
- 경과조치기간(식품표시기준 시행후 신규정에 의해 표시로 이행하는 유예기간)은 가공식품 및 첨가물 모두를 포함하여 5년간으로 하고 신선식품류에 대해서는 1년6개월로 한다.

## □ 제도개요

- 명 칭 : 기능성표시식품
- 개시일 : 2015. 4. 1.(법률 공포 예정)
- 질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미성년, 임산부 및 수유자를 제외)에 대해서 기능성 관여성분에 의한 건강의 유지 및 증진에 도움이 되는 특정보건 목적(질병리스크 감소에 의한 것은 제외)이 기대된다고 하는 취지를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 용기포장에 표시하는 식품을 말함
  - 단, 특별용도식품, 영양기능식품, 주류를 포함하는 음료, 나트륨·당분 등을 과잉섭취시키는 식품은 제외
- 해당식품에 관한 표시내용, 식품관련 사업자명 및 연락처 등 식품관련 사업자에 관한 기본정보, 안전성 및 기능성의 근거에 관한 정보, 생산,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정보, 건강피해 정보수집태세 기타 필요한 사항을 판매개시일의 60일전까지 소비자청에 신고하여야 함
- 표기사항
  - 상호 연관된 의무표시 사항 이외 아래에 관한 표시를 반드시 기재토록 의무화

- ❖ 기능성 표시 식품임을 알리는 문구
- ❖ 과학적근거를 가지는 기능성 관여성분 및 해당성분 또는 해당 성분을 함유하는 식품이 가지고 있는 기능성
- ❖ 1일당 섭취기준량 및 섭취기준량당 영양성분량 및 열량
- ❖ 1일당 섭취기준량당 기능성관여 성분 함유량
- ❖ 소비자청 신고번호
- ※ 기타 세부 기재사항은 별첨의 설명회 자료 참조

## □ 특정보건용식품 등 기존 인증제도와 차이

- 식품의 기능성 표시제도는 기존의 특정보건용식품(토쿠호), 영양기능식품(비타민류)에 이은 제3의 식품표시제도의 하나로 기존의 토쿠호, 영양기능식품과 달리 과학적 근거에 의해 건강효과 또는 성분을 가진 식품에 대해서 제조업체가 과학적 근거자료에 의해 「기능성표시식품」으로 소비자청에 신고만으로 표기 가능
- 특정보건용식품의 경우에는 각종 임상실험을 통해 정부의 허가를 받기까지는 약5년 정도의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됨으로 인해 사실상 신청하는 업체들은 대부분 대기업체에 국한된 것에 비해 이번 기능성 표시식품의 경우 중소기업체도 문호가 개방되었다고 할 수 있다.
- 지정된 식품에 대해서는 「눈이 건강해짐」, 「피부가 깨끗해짐」 등의 통상적으로는 과대광고로 판단되는 문구에 대해서도 약사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 기능성 표시가 가능

### 【기능성 표시 식품】

- ❖ 과학적 근거에 의해 건강효과를 입증하는 식품을 각 기업이 소비자청에 신고하게 되면 소비자청은 제출된 자료와 신고서의 일정요건을 갖추면 접수되고, 접수 후 60일 이후에 신고번호 발급받아 상품판매가 가능
- ❖ 가공식품 뿐만이 아니고 녹차등의 농수산물로도 대상 범위가 확대됨

### 【특정보건용식품(토쿠호)】

- ❖ 특정의 보건효과를 가진 상품을 임상시험등의 자료를 구비하여 소비자청 심사에 합격된 제품에 한해서 기능성 표시가 가능한 제품으로 「지방을 불태워주기 쉽다」, 「지방살이 불기가 어려워지게 한다」는 등의 문구를 상품포장 및 CF등에 사용이 가능함

## 【영양기능식품】

- ❖ 통상 서플리먼트라고 불리워지는 영양기능식품으로 현재 비타민, 칼슘 등 17종류의 영양성분에 대해 소비자청에서 지정. 일정량 이상의 성분이 포함된 제품에 대해 각 기업의 판단에 의해 영양기능식품으로 지정 가능하며, 영양성분 그 자체의 효능에 대해 상품포장에 기재가 가능함

## 2 // 일본 식품표시기준제도 변경에 따른 동향 분석

### □ 도입여건

- 신규 기능성표시제도는 기존의 특정보건용식품 제도와 비교시 등록 여건이 대폭 완화하였다고는 하나 대상제품의 실제도입을 위해서는 사전에 ①<최종제품을 사용한 임상시험결과> 또는 ②<최종성분 또는 기능성 관여성분에 관한 연구논문>을 제출하여 신고번호를 부여 받아야만 가능한 것으로 누구나 할 수 있는 정도의 레벨은 아님
- ②의 연구논문의 경우에도 반드시 국제적으로 인정된 수법(PRISMA 성명 체크리스트등)에 의해 작성된 논문이어야 하며 일본 소비자청에서 검색이 가능하도록 국제논문DB에 등록이 필요하는 등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여짐

### □ 업계 동향

- 소비자에게 알기쉬운 표시를 통해 선택의 폭을 넓힘으로서 소비확대를 통한 산업규모 확대가 큰 메리트로 보여지고 있으며,
- 일본 아지노모토사의 경우 소재부분의 건강기능성을 구체적으로 표기할 수 있어 시장확대의 큰 기회로 생각하고 있으며, 건강식품 제조 판매업체인 FANCL의 경우 타사제품과의 차별화를 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업계에서는 복잡한 제도 도입의 곤란성으로 인해 기존 특정보건용품과 마찬가지로 중소기업체와 대기업체의 차이가 더욱 심화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 일본 농림수산성의 움직임

- 일본 농림수산성에는 녹차등 농수산물에도 등록이 가능하게된 동 제도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녹차, 밀감, 쌀, 계육의 4품목에 대해 생산현장에서 공동으로 기능성표시가 가능토록 외부에 조사 용역을 의뢰한 상태임
  - 2014년 11월에 기존 연구성과를 중심으로 한 시스템아틱레뷰(SR, 체계적 검토)을 외부연구기관에 용역 의뢰하여 2015년 3월말경에 1차 조사결과가 발표될 예정으로 있어 농산물에 대한 발빠른 도입검토를 구체화 하고 있음
  - 녹차(메틸화 카테킨), 밀감( $\beta$ 크립톡산틴), 쌀( $\gamma$ 아미노낙산), 계육(이미다졸지페푸치드)

## □ 한국산 식품에 대한 도입 가능성

- 대일 수출용 한국산 농산식품의 개별업체별 품목표시 도입가능성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일본내 타 업체들의 동향을 볼 필요가 있으나 김치나 고려인삼 등 기존 연구성과가 많이 도출된 경우에는 일본농림수산성과 같이 정부기관이 주관하여 연구성과를 정리 도출함으로서 수출업체가 공동 이용하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됨

(참고자료)

## 일본 식품표시제도의 세부 변경내용

### 1. 식품표시기준의 책정 운영 방침

- 현재 58개의 기준으로 운용되어 오던 식품에 대한 표시기준이 소비자청에서 1개의 기준으로 통합 운용 예정
- 소비자가 원하는 정보제공과 사업자가 실행가능한 범위내에서 균형있는 표시가 가능하도록 표시기준을 책정목적
- 표시의무로 되어있는 표시범위(식품, 사업자등)에 대해서는 현재와 동일
  - 예외사항으로는 식품위생법과 JAS법 기준의 통합에 있어서 가공식품과 신선식품에 대한 구분등을 변경
  - 식품위생법(후생노동성 소관), JAS법(농림수산성 소관)
- 식품에 대한 분류는 사업자의 분류에 따라 가공식품, 신선식품, 첨가물로 구분
  - 식품관련 사업자등에 대해서는 「식품관련사업자에 의한 기준」, 「식품관련사업자이외의 판매자에 의한 기준」으로 구분
- 현행 영양표시기준을 의무화 조치
  - 대상성분, 대상식품, 대상사업자등에 대하여 규정
- 안전성에 관한 규정을 보다 알기 쉽게 개정
  - 예를 들어 알레르기 표시관련 특정가공식품 원재료에 마요네즈로 표시한 경우에 계란을 포함하였다는 표시를 생략 가능하였으나 향후 반드시 표기토록 개정

## 2. 표시제도의 현행제도와 비교시 주요 변경사항

### 1) 가공식품과 신선식품의 구분을 통일

- 현행 JAS법과 식품위생법으로 각기 구분되어 운용되던 것을 JAS법의 취지에 근거한 구분으로 통일하여 정리

#### 【신규로 가공식품으로 분류되는 것】

현행 식품위생법에서는 표시대상으로 되어 있지 않았던 경도의 산염, 설말린 제품, 데친식품, 건조과일등도 가공식품으로 구분 정의됨에 따라 향후 알레르기표시, 제조공장등의 소재지등에 관한 표시가 의무화 됨

### 2) 제조공장 고유기호 사용에 관한 규정 개선

- 원칙적으로 동일제품을 2개 이상 공장에서 제조할 경우에 한해서 사용가능
- 제조공장 고유기호를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 한가지 사항을 표시
  - ① 제조공장 소재지 등의 정보제공을 요구할 경우에 회신 가능한 자의 연락처
  - ② 제조공장 소재지등을 표시한 웹사이트의 어드레스
  - ③ 당해제품의 제조를 실시하고 있는 모든 제조공장 소재지등
- 단, 이번 규정 개선에서 가공용식품은 대상에서 제외

### 3) 알레르기 표시규정 개선

- 특정가공식품 및 그 확대표기를 폐기함에 따라 보다 광범위한 원재료에 대해 알레르겐을 포함하였다는 취지의 표시를 의무화함
- 알레르기환자의 상품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개별표시를 원칙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일괄표시를 가능한 것으로 한다.
- 일괄표시의 경우 일괄 표시란을 보는 것으로 그 식품에 포함된 모든 알레르겐을 파악이 가능하도록 일괄표시란에 모두 표시 할 것
  - 현재는 계란이나 소맥이 원재료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새롭게 일괄표시란에 표시하지 않아도 되었으나 향후에는 계란, 소맥도 일괄 표시란에 표시가 필요시 됨



#### 4) 영양성분표시의 의무화

- 식품관련사업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소비자용 가공식품 및 첨가물에 대해서 영양성분을 반드시 표기토록 의무화 조치
  - 의무표기 : 에너지, 단백질, 지질, 탄수화물, 나트륨(식염상당량)
  - 임의(권장) : 포화지방산, 식물성기
  - 임의(기타) : 당류, 당질, 콜레스테롤, 비타민·미네랄류

#### 5) 영양강조 표시에 따른 규정 개선

- 상대표시(코덱스에 준하는 도입)
  - 저감되었다는 취지의 표시를 할 경우(열량, 지질, 포화지방산, 콜레스테롤, 당류 및 나트륨) 및 강화되었다는 취지의 표시를 할 경우(단백질 및 식품섬유)에는 기준치이상의 절대차에 더해서 새롭게 25% 이상의 상대치가 필요
- 영양강조표시를 하기 위한 요건 변경
- 강화되었다는 취지의 표시를 할 경우(미네랄류(나트륨을 제외), 비타민류)에는 「포함되었다는 취지」의 기준치 이상의 절대차가 필요함
- 무첨가 강조표시에 대한 규정 신설(코덱스에 준하는 표시)
  - 식품에 대한 당류무첨가에 관한 강조표시 및 식품의 나트륨염 무첨가에 관한 강조표시(식염무첨가표시를 포함)를 할 경우에는 각기 일정한 조건이 충족된 경우에 한해 표시가 가능함

#### 6) 영양기능식품에 관한 규정 변경

- 대상성분 추가
  - 영양성분 기능을 표시가능한 것으로 하며, 신규로 「n-3계 지방산」, 「비타민 K」, 「칼륨」을 추가함
- 대상식품 범위의 변경
  - 계란이외의 신선식품에 대해서도 영양기능식품 기준의 적용대상으로 함

○ 표시사항의 추가 및 변경

- 영양소등 표시 기준치의 대상연령(18세 이상) 및 기준열량(2,200kcal)에 관한 문구를 표시 해야 함
- 특정대상자(환자, 임산부등)에 대하여 정형문 이외의 주의가 필요시 되는 것에 대해서는 해당 주의사항을 표기해야 함
- 영양성분량 및 열량을 표시할때의 식품단위는 1일당 섭취기준량으로 할 것
- 신선식품의 영양성분 기능을 표시할 경우 보존방법을 표시

7) 원재료명 표시등에 관한 규정 변경

- 빵류, 식용식물유지, 드레싱 및 드레싱형태의 조미료, 풍미조미료에 대해서 원재료 및 첨가물을 구분하여 각기 차지하는 중량별 비율이 높은 순으로 표시
- 복합원재료 표시는 그것을 구성하는 원재료를 분할하여 표시하는 것이 알기쉬운 경우에는 구성하는 원재료를 분할하여 표시가능
- 프레스햄, 혼합프레스햄에 관하여 원재료명중의 전분표시에 「전분함유율」을 병기하고 있으나, 「소세지」, 「혼합소세지」와 동일하게 「전분함유율」의 표시사항의 항목을 별도로 꼬집어 내어서 독립 표기 등

8) 판매용 첨가물의 표시관련 규정 개선

- 일반소비자용 첨가물에는 신규로 「내용량」, 「표시책임자명 또는 명칭 및 주소」를 표시
- 업무용 첨가물에는 신규로 「표시책임자명 또는 명칭 및 주소」 표시

9) 통지등으로 규정되어 있는 표시관련 규정일부를 기준으로 규정

- 안전성을 확보하는 관점에서 현행 지도사항에서 의무표시로 규정  
→ 복제품의 식중독 대상 표시 및 보툴리누스균의 식중독 대책 표시

- 알기쉬운 식품표시기준을 책정한다는 관점에서 기준을 마련하여 일괄적으로 규정
- 예) 영양소등 표시기준치, 영양기능식품이라는 취지 및 해당 영양성분명칭 표시 방법등

#### 10) 표시 위치 개선

- 표시가능면적이 대체적으로 30cm<sup>2</sup>이하일 경우 안전성에 관한 표시사항
  - 명칭, 보존방법, 소비기한 또는 상미기한, 표시책임자, 알레르겐 및 L- 페닐알라닌화합물을 포함하는지 여부등 상기 사항에 대해서는 생략 불가
- 표시책임자를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식품제조 또는 가공한 장소에서 판매하는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양도(판매를 제외) 하는 경우 또는 식품관련사업자 이외의 판매자가 용기포장된 가공식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제조공장 또는 가공장의 소재지(수입품의 경우에는 수입업체의 영업소 소재지) 및 제조자 또는 가공자의 성명 또는 명칭(수입자에 있어서는 수입업체의 성명 또는 명칭)에 대해서도 생략불가
- 원재료와 첨가물은 구분을 명확히 표시

#### 11) 경과조치 기간

- 경과조치기간(식품표시기준 시행후 신규정에 의해 표시로 이행하는 유예기간)은 가공식품 및 첨가물 모두를 포함하여 5년간으로 하고 신선식품류에 대해서는 1년6개월로 한다.

### 3. 식품의 기능성 표시제도 신설

#### 1) 정의

- 명 칭 : 기능성표시식품
- 개시일 : 2015.4. 1.(법률 공포 예정)

- 질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미성년, 임산부(임신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 포함) 및 수유자를 제외)에 대해서 기능성관여성분에 의한 건강의 유지 및 증진에 도움이 되는 특정보건 목적(질병리스크 저감에 의한 것을 제외)이 기대된다고 하는 취지를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 용기포장에 표시하는 식품을 말함
  - 단, 특별용도식품, 영양기능식품, 주류를 포함하는 음료, 나트륨·당분 등을 과잉 섭취시키는 식품은 제외
- 해당식품에 관한 표시내용, 식품관련사업자명 및 연락처등의 식품관련사업자에 관한 기본정보, 안전성 및 기능성의 근거에 관한 정보, 생산,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정보, 건강피해 정보수집태세 기타 필요한 사항을 판매개시일의 60일전까지 소비자청에 신고하여야 함

## 2) 표시사항

- 상호 연관된 의무표시사항이외 아래에 관한 표시를 반드시 기재토록 의무화
  - 기능성표시식품임을 알리는 문구
  - 과학적근거를 가지는 기능성 관여성분 및 해당성분 또는 해당성분을 함유하는 식품이 가지고 있는 기능성
  - 1일당 섭취기준량
  - 1일당 섭취기준량당 영양성분량 및 열량
  - 1일당 섭취기준량당 기능성관여 성분 함유량
  - 소비자청 신고번호
  - 식품관련사업자 연락처(전화번호)
  - 기능성 및 안전성에 대해서 정부에 의한 평가를 받지 않는다는 문구
  - 섭취방법
  - 섭취시 주의사항
  - 균형있는 식생활 보급계몽을 도모하는 문구
  - 조리 또는 보존방법 관련하여 특히 주의를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해서

는 해당주의사항

- 질병진단, 치료, 예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설명
- 질병에 걸린 사람, 미성년, 임산부(임신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 포함) 및 수유자에 대한 기능성 소구가 아니라는 점( 단, 신선식품은 제외)
- 질환환자는 의사, 의약품 복용하고 있는 사람은 의사 및 약제사에 상담한 후에 섭취하여야 한다는 문구
- 컨디션에 이상을 느낀 경우에는 지체없이 섭취를 중지하고 의사에게 상담토록 하는 문구